

스마트폰 수험총서

공부혁명 엠북(mbook.kr)

MEDICAL CARE & HEALTHY



2026/27

감염병예방법

- ☆ 1시간 36분 완성
- ☆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정리
- ☆ 최근 법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

도서명 : 감염병예방법

ISBN : 979-11-7393-267-0

발간일 : 2026-06-22

형식 : 스마트폰용 전자책(PDF)

저자 : 엠북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9,000원



감염병예방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p7)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p25)

제3장 신고 및 보고(p39)

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p45)

제5장 고위험병원체(p55)

제6장 예방접종(p68)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p83)

제8장 예방 조치(p114)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p133)

제10장 경비(p144)

제11장 보칙(p161)

제12장 벌칙(p171~180)

[약어]

보건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부령은 보건복지부령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등은 국가, 지자체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는 시, 군, 자치군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군의 구청장

시군구등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의사등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청장등은 청장, 시도지사, 시군구

장관등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시도지사등은 시도지사, 시군구

통합시스템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중앙기관장은 (관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감염병정보시스템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관리기관은 감염병관리기관

관리시설은 감염병관리시설

위원회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조사관은 역학조사관

수습조사관은 수습역학조사관

조사관등은 조사관, 수습조사관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초록색은 최근 1~2년내 개정된 내용

붉은색은 시행 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장 총칙

1~6조

1. 목적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국민 건강 증진/유지

2. 정의

가. 감염병

- 1급/2급/3급/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1) 제1급감염병(이하 1급)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2) 제2급감염병(이하 2급)

-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유행시 24시간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E형간염

3) 제3급감염병(이하 3급)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 발생/유행시 24시간내 신고해야 하는 다음
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 쯤쯤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 치쿤구니아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비고) 1~3급은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해 청장이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4) 제4급감염병(이하 4급)

- 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감염병

. 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포함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자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5) 기타 감염병

- 다음 중 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a) 기생충감염병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

b)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c) 생물테러감염병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

d) 성매개감염병

- 성 접촉을 통해 전파

e) 인수공통감염병

- 동물/사람 간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

f) 의료관련감염병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
- 감시활동 필요

나. 감염병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등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자